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 박주민·전재수·이병진

김준혁 • 한창민 • 이기헌

염태영 • 윤종군 • 박해철

김 윤·조 국·서영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항공기, 공항, 철도 객차,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 화되지 못한 실정임.

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, 전통시장,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- 8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- 9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	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
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	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-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	
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	
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	
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	
1. ~ 6의3. (생 략)	1. ~ 6의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
	이상의 「노인복지법」 제31
	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<u><신 설></u>	8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
	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
	에 따른 전통시장
<u><신 설></u>	9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
	이상의 「문화예술진흥법」
	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
	<u>시설</u>
<u>7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